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25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민홍철・맹성규・문진석

김문수 • 백혜련 • 천준호

정준호 · 김기표 · 한준호

박홍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

하지만,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이 노인 복지시설 등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규정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는 노인 급식 지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 할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 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 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1.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2.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 3. 체력 향상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 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 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노인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5(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 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3. 체력 향상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미리 발견하여 노인이 제때에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2 호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